高麗王朝代 高麗와 교류하였던 諸國과 高麗의 服飾制度에 관한 硏究(Ⅴ－Ⅱ)

－金 敗亡後, 元服屬期 100餘年間의 高麗服飾制度(AD 1224~1370)－

同德女子大學敎 家政學科
敎 授 任 明 美

目 次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目的
　第2節. 硏究範圍와 內容
　第3節. 硏究方法
第2章. 元과 高麗와의 관계
　第1節. 高宗代
　第2節. 元宗代
　第3節. 忠烈王代
　第4節. 忠宣王代
　第5節. 忠肅王代
　第6節. 忠惠王代
　第7節. 忠穆王代
　第8節. 忠定王代
　第9節. 恭愍王代
　第10節. 禑王代
第3章. 元服屬期 高麗의 服飾制度
　第1節. 男子服飾
　第2節. 女子服飾
結論 및 要約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目的

本 硏究는 高麗王朝 500年의 服制에 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硏究의 일환으로 高麗王朝와 교류관계에 있었던 中原의 漢族王朝와 東北方 諸王朝와의 관계 考察 및 諸王朝의 服飾制度 考察을 通해 복식관련자료가 미비한 高麗王朝代 服飾制度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第2節. 硏究範圍와 內容

本 硏究는 元복속기 고려왕조의 복식제도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고려왕조 복식전반에 관한 고찰은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그중 다섯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高麗王朝代 高麗와 교류관계에 있었던 諸國과 고려의 복식제도에 관한 硏究(Ⅴ－Ⅱ)'에 해당하는 것으로 '－金 敗亡後 元복속기 100餘年間의 高麗服飾制度에 관한 硏究－'이다. 즉

1. 建國初 唐制를 수용한 新羅服制 着用 40餘年間의 服飾 (AD. 918~960) (Ⅰ)

2. 五代, 後周의 服制에 준한 制定服制, 宋·遼制를 使用한 200餘年間의 服飾 (AD. 960~1142) (Ⅱ)

3. 遼敗亡後, 仁宗代 宋使 徐兢의 高麗圖經을 通해서 본 服飾制度 (AD. 1122~1142) (Ⅲ)

4. 毅宗代 詳定服制와 金制를 併用한 100餘年間의 服飾 (AD. 1142~1224) (Ⅳ)

5. 金 敗亡後, 元服屬期 100餘年間의 服飾制度 (AD. 1224~1370) (Ⅴ)

　－AD. 1224~1370年 高麗와 교류하였던 元王朝服飾을 중심으로－(Ⅴ－Ⅰ)

　－金 敗亡後 元服屬期 100餘年間의 高麗服飾制度를 중심으로－(Ⅴ－Ⅱ)

6. 元 敗亡後 22餘年間 明朝服飾 수용服制 (AD. 1370~1392) (Ⅵ)

이를 第1章 序論에서 研究目的, 研究범위와 내용, 研究方法을 밝히고, 第2章에서 元과 高麗와의 관계를 23代 高宗代부터, 王在位別로 32代 禑王代까지 주로 元의 수탈과 服飾材料 및 衣服의 相互교류관계에 촛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第3章에서 元服屬期 高麗의 服飾制度를 史料, 壁畵, 畵像, 出土 및 傳世 實遺物 등을 中心으로 考察한다.

第3節. 研究方法

1) 正史類, 總書類, 經書類, 諸者白家書類, 其他史料

2) 研究書(中·日·韓·英書, 其他)

3) 研究論文(中·日·韓·英書, 其他)

4) 出土遺物, 古墳壁畵, 考古學資料, 傳世遺物, 人物畵, 繪畵 등을 中心으로 研究考察한다.

○ 結論 및 要約

1. 蒙古와 高麗는 23代 高宗 3年(太祖 11年)부터 32代 禑王 14年(1388)까지 172年間 교류하였다.

2. 高麗는 蒙古의 侵攻과 수탈에 견딜 수 없었으며 元宗 元年부터 元의 中統年號를 使用하였다.

3. 蒙兵은 위협적으로 本國人이 蒙古風俗을 따르기를 강요하였으나 高麗 침공기간 동안은 蒙古族이 初期에 漢族에게 開剃辮髮을 강요하였듯이, 高麗에 대해 蒙俗강요와 계속적인 위협이 있었으나, 元朝 역시 北京으로 수도를 옮긴 후 元世祖는 至元 8年(1271 : 高麗元宗 12년) '元'으로 國號를 바꾸고 朝儀에 漢族(唐·宋)의 朝儀制度와 그 服飾制度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元宗 元年 蒙使가 갖어온 元世祖의 詔書에는 衣冠制度를 高麗風俗대로 하되 元俗으로 고치지 말도록 하였었다. 그리하여 元宗代까지는 國俗을 지켰으며, 蒙古天子의 윤허를 얻어 本國服飾着用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元世祖의 딸에게 장가든 忠烈王이 元에서 귀국시 辮髮元服하였다. 그리고 元宗代 臣下들 중에는 蒙兵의 위협이건 自意건 蒙俗着用을 併行하는 사람도 있었다. 드디어 忠烈王 4年에는 領을 내려 元俗을 따르도록 하여 王부터 士庶에 이르기까지 모두 따랐다.

4. 忠烈王 이후 4王이 元宗室에서 王妃를 맞았고, 元의 끊임없는 高麗處女에 대한 公納要求와 蒙將이나 大臣家, 王室에서 高麗의 良家나 宰相의 女息을 要求해오고, 兵士들의 妻室까지 수백명의 高麗女子들이 元代蒙古人들과의 관계로 元代에는 相互服飾文化, 特히 女服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5. 元代, 高麗服制는 祭祀禮服, 詔, 朝賀, 節日, 賀禮를 받을 때는 唐·宋制에 준한 毅宗代 詳定冠服定制를 따랐고, 平常服 등은 忠烈王 4年 이후부터 恭愍王 19年까지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蒙古服制化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蒙古服制化'하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구려·발해·요·금·원으로 이어진 우리 上古服制의 재수용을 의미한다. 즉, 元服屬期 高麗 諸禮服은 毅宗代 詳定 冠服制로 1) 祭服 : 王은 九旒冕, 九章服制이고, 百官은 七旒冕, 五旒冕, 三旒冕, 平冕, 黑弁幘制이고, 2) 朝, 公服 : 幞頭에 紫, 緋, 綠 三色 公服制로 形制는 右衽, 團領袍制에 帶를 着用하는데 宰樞 이상이 玉帶, 6品 이상은 犀帶, 9品 이하(元宗代), 忠烈王代는 7品 이하가 黑帶를 하였다. 王의 朝服袍色은 忠烈王代 芝黃色으로 하였다가 다시 赭黃色으로 하였으며, 뒤에는 黃袍를 사용하였다. 3) 王의 便·常服 : 服制는 3種이 있는데 ① '衣'制로 '衣'制는 大口袴大袖褶制이다. 王의 경우 服色은 黃色을 사용하였다. ② 元의 '只孫'制, 戎服制인 上衣下裳 連接의 襞積袍制를 着用하였다. ③ 交領, 右衽, 長袍制로 兩開釵이다. 王과 百官의 便, 常服制는 同形制이나 服材, 服色等으로 구별하였다. 袴나 袖의 幅이 窄小하였다.

儀仗服도 高宗이후 부분적으로는 改定이 있었으나 毅宗代 詳定 服制에 준하였다.

6. 忠肅王代 '元은 國人들의 着用服色의 貴賤을 가려 制定하여 주었다' 하였는데, 충숙왕 2년은 元英宗 延祐 2年(1315)으로 元의 仁宗은 元年 12月 自國服制의 服色을 定하게 되는데 충숙왕 元年, 元은 征東行政西省을 開京에 두고 高麗의 항복을 받은 뒤 國號까지 없애려 하였으나 고려의 간청으로 겨우 면하였으며, 이처럼 高麗를 自國의 확고한 위성국가로 인정한 元은 自國制定服色制에 입각한 禁令 및 服色制를 高麗에게도 동시에 실시케 하였다.

7. 恭愍王 16年에 이르러서는, 百官의 常禮服으로 '笠帽'와 '衣'制의 '黑衣, 袴褶服制'를 制定하기에 이르며 이는 100年間 계속된 元代의 영향으로 蒙古의 笠帽制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후 笠帽官服制

가 國俗을 이루게 된다.

8. 恭愍王 23年 正式으로 元俗 服制着用을 禁하였다.

9. 禑王 3年, 北元에 朝貢하고 元俗을 따르도록 하였다.

禑王 5年 元俗에 따르는 것을 禁하였다.

禑王 14年 元俗을 다시 따르기로 하고 編髮·元服하였다.

禑王 14年 4월 元俗을 法制化하였다.

禑王 14年 6月 元俗着用을 禁하였다. 이로서 高麗는 正式으로 元俗과 開剃辮髮樣을 禁하였다.

10. 女服은 唐·宋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對襟, 開襟의 半袖短衫을 襦裙위에 덧입는 것이 元服屬期 女服의 특징이며, 귀천은 服材, 服色修飾材料의 等으로 구별하였다. 平庶民高麗婦女는 固有한 허리길이 窄袖 襦에 下裳制가 基本이었다. 100餘年間의 복속기간 중 不知不識間에 同化 혹은 變容을 通해 兩國의 服制에 相互 끼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상세히 밝히기로 미루며 本 研究는 이를 위한 先行研究임을 밝혀둔다.